

대구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가단1214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경북 청도군 B 대 575㎡에 관하여,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2021. 8.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21. 9. 2. 접수 제144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원고와의 사이에 ① 2020. 10. 26. 신용보증원금 9,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0. 10. 26.부터 2025. 10.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② 2020. 8. 11. 신용보증원금 9,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0. 8. 11.부터 2025. 8. 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가 2021. 12.경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D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4. 11. D은행에 19,294,2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경북 청도군 B 대 5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는 2021. 8. 1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1.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무자력인 C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위와 같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21. 12. C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처분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 E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들어 C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거나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① 피고는 동생인 C 명의로 2021. 3. 22.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F에게 피고의 모 G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21. 4. 2.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②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용으로 2021. 4. 13. 200만 원, 같은 해 5. 10.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③ C는 원고와 2020. 8. 11., 2020. 10. 26.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행 등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였던 C가 2021. 3. 31.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